
2022년도 제4차 재무경영위원회 안건자료



2022. 6. 7

목 차

□ 심의사항

- 제12호 인천대학교 조교 보수 규정 제정규정안 5
- 제13호 인천대학교 조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제정지침안 15
- 제14호 인천대학교 글로벌언어문화원 INU어학센터
교육운영 지침 일부개정지침(안) 39
- 제15호 2022년 법인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57

《 별책자료 》

- 2022년도 법인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서
- 2022년도 법인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세부사업설명서

의안 번호	제2022 - 12호
-------	-------------

인천대학교 조교 보수 규정 제정규정안

제 출 자	인천대학교 교무처장 송다영
제출년월일	2022. 6. 7.

인천대학교 조교 보수 규정 제정규정안

의 변	안 호	2022-12
--------	--------	----------------

제출일자 : 2022.06.07

제 출 자 : 교무처장

1. 제안사유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정관」 제40조 및 「2020년도 조교 노조(전국대학노동조합 인천대지부) 단체협약서」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조교 인사제도 마련을 위하여 인천대학교 조교 보수 규정에 관한 세부기준 제정
- 대학 법인화 이후 부재하였던 조교 보수 제규정의 명문화된 근거를 마련하여 학과(부)·전공의 교육·연구 및 학사업무 처리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운영 도모

2. 주요내용

구 분	주요 내용	비고
봉급 및 수당 (안 제5조 ~ 9조)	· 봉급 및 수당(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 가족수당, 육아휴직수당, 학사관리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으로 구성	
보수 지급 (안 제10조 ~ 20조)	· 보수는 매월 17일 지급하고, 휴직기간 중에는 감액 지급 · 징계처분기간 보수 감액 지급 - 정직은 보수의 전액, 감봉은 보수의 1/10 감함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정관」, 「2020년도 조교
노조(전국대학노동조합 인천대지부) 단체협약서」

○ 추진경과 및 향후 일정

- 교무회의 : 2022.05.17.(화)
- 총장 방침 : 2022.05.18.(수)
- 의견 조회 : 2022.05.18.(수) ~ 05.24.(화)
- 사전 심사 : 2022.05.31.(화)
- 재무경영위원회 심의 : 2022.06.07.(화)
- 이사회 심의 : 2022.06. 이후

인천대학교 조교 보수 규정 제정규정안

인천대학교 조교 보수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인천대학교 조교 보수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대학교법인 인천대학교 정관」 (이하 “정관”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인천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조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정관 제40조의 조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본교 조교의 보수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수”란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봉급”이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조교에게 지급되는 기본급여로서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3. “수당”이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4. “승급”이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나 그 밖에 다른 규정에 따라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5. “보수의 일할계산”이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보수의 결정) 본교 조교의 보수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침으로 정하되, 재무경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장 봉급

제5조(조교의 봉급) 조교의 봉급월액은 지침에 의해 해당 봉급표에 명시된 금액으로 한다.

제3장 호봉획정 및 승급

제6조(호봉획정) 호봉 획정 및 승급은 총장이 시행한다.

제7조(초임호봉의 획정) ① 조교를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② 조교의 초임호봉은 지침에서 정하는 조교의 경력환산율표에 의하여 획정한다.

제8조(호봉 재획정 및 정정) ① 초임호봉 획정 시 반영되지 않았거나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할 때는 호봉을 재획정 한다.

② 호봉의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때에는 그 잘못된 호봉발령일자로 소급하여 호봉을 정정한다.

제4장 수당

제9조(수당의 지급) ① 조교에게는 봉급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여수당 :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
2. 가계보전수당 : 가족수당, 육아휴직수당
3. 학사관리수당
4. 시간외근무수당
5. 실비보상 등 :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의 지급범위, 지급액, 그 밖에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장 보수지급

제10조(보수지급의 방법) ① 보수는 현금 또는 요구불예금으로 지급한다.

② 보수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되, 출장, 항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원천징수 등의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에서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원천징수, 특별징수 또는 공제(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 등”이라 한다)할 수 없다.

1. 법령에 따라 원천징수 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
2.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제회의 부담금 등에 대하여 원천징수 등을 하는 경우
3. 법원의 재판에 따라 원천징수 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본인이 서면 제출 또는 전자관리시스템(조교의 인사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인사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을 통하여 지출원에게 동의한 사항에 대하여 원천징수 등을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 등의 방법,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2조(보수지급일) ① 보수의 지급일은 매월 17일로 한다. 다만, 보수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② 면직 또는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휴직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면직일 또는 휴직일에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보수계산) ① 조교의 보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임용에서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이 규정에 따라 감액된 봉급을 지급받는 사람의 봉급을 다시 감액하려는 경우(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사유로 봉급을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복되는 감액기간에 대해서만 이미 감액된 봉급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제14조(5년 이상 근속한 조교의 월 중 면직 등의 경우 봉급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면직되거나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1. 5년 이상 근속한 조교가 월 중에 15일 이상을 근무한 후 면직되는 경우.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파면 또는 해임에 의하여 면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2년 이상 근속한 조교가 「병역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

3. 조교가 재직 중 업무로 사망하거나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재직 중 사망하여 면직(그 달 1일자로 면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봉급을 지급하는 경우 징계처분이나 그 밖의 사유로 봉급이 감액(결근으로 인한 봉급의 감액은 제외한다)되어 지급 중인 조교에게는 감액된 봉급을 계산하여 그 달의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제15조(결근기간 등의 봉급감액) ① 결근한 사람으로서 그 결근 일수가 해당 조교의 연가 일수를 초과한 조교에게는 연가 일수를 초과한 결근 일수에 해당하는 봉급 일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무급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일수만큼 봉급 일액을 빼고 지급한다.

제16조(퇴직 후의 실제근무에 대한 보수지급) ① 퇴직 또는 직위해제처분이 소급 적용되는 사람에게는 그 소급 적용된 날 이후의 근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한다.

② 면직된 사람이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를 위하여 총장의 명을 받아 계속 근무한 때에는 1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실제 근무일에 따라 면직 당시의 보수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휴직기간 중의 봉급 감액) ① 신체상·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조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봉급의 일부를 지급한다. 다만, 업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1. 휴직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 봉급의 70퍼센트

2. 휴직 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 봉급의 50퍼센트

② 외국유학 또는 1년 이상의 국외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조교에게는 그 기간 중 봉급의 50퍼센트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총장은 소속 조교가 휴직목적과 달리 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받은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지 않은 휴직의 경우에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8조(징계처분기간의 보수 감액) 징계처분에 따른 보수의 감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정직 : 보수의 전액을 감함.
2. 감봉 : 보수의 1/10을 감함

제19조(직위해제기간 중의 봉급감액) 직위해제 된 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봉급의 일부를 지급하되, 직위해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 중에는 봉급의 30퍼센트를 지급한다.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저조한 자로 직위해제 된 사람 : 봉급의 80%
2. 중징계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은 제외한다)로 직위해제 된 사람 : 봉급의 70%

제20조(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조교의 보수 지급) ① 조교에게 한 징계처분, 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징계의결 요구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은 제외한다)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원래의 정기승급일을 기준으로 한 당시의 보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재정계절차에 따라 징계처분 하였을 경우에는 재정계처분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되, 재정계처분 전의 징계처분기간에 대해서는 보수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②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그 징계의결요구가 기각되거나, 그 직위해제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원래의 정기승급일을 기준으로 한 보수와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중에 지급한 보수와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6장 보칙

제21조(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안 번호	제2022 - 13호
-------	-------------

인천대학교 조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제정지침안

제 출 자	인천대학교 교무처장 송다영
제출년월일	2022. 6. 7.

인천대학교 조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제정지침안

의 변	안 호	2022-13
--------	--------	---------

제출일자 : 2022.06.07

제 출 자 : 교무처장

1. 제안사유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정관」 제40조 및 「2020년도 조교 노조(전국대학노동조합 인천대지부) 단체협약서」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조교 인사제도 마련을 위하여 인천대학교 조교 보수 규정에 관한 세부기준 제정
- 대학 법인화 이후 부재하였던 조교 보수 제규정의 명문화된 근거를 마련하여 학과(부)·전공의 교육·연구 및 학사업무 처리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운영 도모

2. 주요내용

- 인천대학교 조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구 분	주요 내용	비고
월 봉급액 (안 제4조)	· 월봉급액은 별표 1로 규정함	
수당 (안 제9조 ~ 18조)	· 각종 수당의 지급 기준 및 금액에 대하여 규정함 -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 가족수당, 육아휴직수당, 학사관리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주요 변경사항

구 분	당초	변경	비고
일부 수당의 명칭변경 통합	· 정액연구비(월 230,810원) · 교재연구비(월 81,770원) · 학사지도비(월 56,000원)	· 학사관리수당(월 368,580원)	
시간외근무수당 신설	-	지침안 제14조 (시간외근무수당)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조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준단가에 의해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023년 법인회계 이후 예산확보를 통해 지급 협의, 조교 노조와 임단협을 통해 세부기준 마련
연가보상비 신설	-	지침안 제17조(연가보상비) 조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다.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정관」, 「2020년도 조교 노조(전국대학노동조합 인천대지부) 단체협약서」

○ 추진경과 및 향후 일정

- 교무회의 : 2022.05.17.(화)
- 총장 방침 : 2022.05.18.(수)
- 의견 조회 : 2022.05.18.(수) ~ 05.24.(화)
- 사전 심사 : 2022.05.31.(화)
- 재무경영위원회 심의 : 2022.06.07.(화)
- 이사회 심의 : 2022.06. 이후

인천대학교 조교 보수업무 등 처리 지침 제정지침안

인천대학교 조교 보수업무 등 처리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인천대학교 조교 보수업무 등 처리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인천대학교 조교 보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호봉획정 등 보수 관련 업무처리의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인천대학교 (이하 “본교” 라 한다) 조교 보수업무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지침은 「인천대학교 조교 보수 규정」 제2조의 대상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보수의 결정) 이 지침에 규정된 조교의 보수에 대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재무경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장 봉급

제4조(월봉급액 등) 조교의 월봉급액은 별표 1에 따른다.

제3장 호봉획정 및 승급

제5조(초임호봉의 획정) 조교의 초임호봉은 별표 2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획정한다.

제6조(정기승급) ① 조교의 호봉 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이하 “승급기간” 이라 한다)은 1년으로 한다.

② 조교의 호봉은 매달 1일자로 승급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에 따라 승급제한을 받고 있는 조교는 승

급제한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승급한다. 이 경우 그 조교의 호봉은 그 조교가 제6조에 따른 승급제한 사유 없이 계속 근무하였을 때 획정되는 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승급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기간 동안 승급시킬 수 없다.

1.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직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 중인 사람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가산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정직 : 18개월

나. 감봉 : 12개월

다. 견책 : 6개월

② 제1항에 따라 승급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징계처분이나 그 밖의 사유로 승급을 제한받는 경우 그 승급제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승급제한 기간이 끝난 날부터 기산한다.

③ 조교가 징계처분을 받은 후 별도로 정하는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최근에 받은 가장 중한 징계처분에 대해서만 제1항제2호에 규정한 승급제한 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제8조(승급기간의 특례) 제7조의 승급제한 기간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1. 「병역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휴직한 기간

2.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난 경우의 제7조제1항제2호의 기간.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징

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지나야 한다.

가. 정직: 7년

나. 감봉: 5년

다. 견책: 3년

3. 총장이 정한 국가기관, 공공단체, 정부투자기관, 국내외의 교육기관, 연구기관 등에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하는 경우 그 휴직기간(비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에 대해서는 그 휴직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과 외국유학을 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

4.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조교가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에 따른 사유로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만 산입하되,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은 전 기간을 산입한다.

5. 직위해제처분기간 중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중징계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로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1)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그 징계의결 요구가 기각된 경우

2) 직위해제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의결 요구에 의한 징계처분이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은 제외한다)로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다. 금품·향응수수, 업무상 횡령·배임, 공금유용, 채용비리,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교외 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자로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

람이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6. 직무수행 능력 부족 또는 근무성적 불량 등의 사유로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 또는 규정상의 징계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로 그 직위해제처분 또는 징계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확정된 경우 그 처분기간(처분으로 인하여 승급을 제한 받은 기간을 포함한다.)

7. 면직, 해임 또는 파면 처분이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로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그 면직, 해임 또는 파면 처분으로 인한 퇴직기간

제4장 수당 등

제1절 상여수당

제9조(정근수당 및 장기근속수당) ① 조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별표 3의 지급 구분에 따라 정근수당을 지급하며, 그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1월 1일 현재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조교 중 지급대상기간인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조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조교도 포함한다)에게 지급한다.

2.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7월 1일 현재 조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조교 중 지급대상기간인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조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조교를 포함한다)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은 제1항 각 호의 지급대상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조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신규 임용된 조교와 직위해제 또는 휴직처분을 받은 조교의 경우에는 해당 지급대상기간 중 조교로 실제

근무한 기간(직위해제 처분기간은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으로 보고,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국외 유학을 하게 된 때, 만 8세 이하 또는 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조교가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에 따른 휴직기간과 직무상 질병에 따른 휴직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본다)에 따라 별표 5와 다음 계산식에 의해 지급되, 실제 근무한 기간을 계산할 때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text{지급금액} = \text{제1항의 정근수당액} \times \frac{\text{실제 근무한 기간(개월)}}{6(\text{개월})}$$

③ 제1항에 해당하는 조교에게는 근무연수에 따라 매월 보수지급일에 별표 3의 지급 구분에 따라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정직·감봉·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자에게는 별표 5의 지급기준에 따라 장기근속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근무연수는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며, 별표 2의 경력환산율표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호봉산정에 반영되는 유사경력은 정근수당 지급을 위한 근무연수계산에서 제외하며, 신규채용자는 본교 근무경력을 근무연수로 계산한다.

제2절 가계보전수당

제10조(가족수당) ① 조교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족수당을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인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1. 배우자: 월 4만원
2.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 월 2만원
3. 자녀: 첫째 자녀 월 2만원, 둘째 자녀 월 6만원, 셋째 이후 자녀 1명당 월 10만원

② 제1항에서 부양가족이란 부양의무를 가진 조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조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

를 같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조교의 근무형편에 따라 해당 조교와 별거하고 있는 가족(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조교의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조교 본인과 배우자의 자녀로 한정한다)은 부양가족에 포함한다.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계부 및 계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3.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직계비속과 19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형제자매

③ 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부양가족 중 장애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의 증명은 장애등급 등을 명기한 의사의 진단서(「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의한 장애진단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되, 그 밖의 경우 해당 개별 법령에서 정한 서식에 의한다)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등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하되, 이를 부양가족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4. 「공무원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5.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하는 조교가 2명 이상인 경우나 부부가 조교인 경우에는 그 중 1명의 조교에게만 수당을 지급한다.

⑤ 부부 중 1명은 조교이고 배우자는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근무하면서 해당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 해당 조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2. 「별정우체국법」 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5.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⑥ 가족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조교 또는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조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부양가족신고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가족수당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까지 지급하되, 해당 회계연도 이외에는 소급 적용할 수 없다.

⑧ 정직·감봉·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사람에게는 「인천대학교 조교 보수 규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지급구분에 따라 가족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⑨ 총장은 조교가 거짓으로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도록 하고, 해당 조교에게는 1년의 범위에서 가족수당의 지급을 정지한다.

제11조(육아휴직수당) ①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조교가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로 30일 이상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

한 조교의 육아휴직수당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로서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조교인 경우 그 조교의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수당은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월별 상한액은 250만원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한 조교에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육아휴직수당의 8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해당 금액이 제1항 단서에 따른 최소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최소 지급액을 지급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육아휴직수당의 1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제3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육아휴직수당에서 제1항 단서에 따른 최소 지급액을 빼고 남은 금액을 말한다)은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7개월째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⑤ 육아휴직수당의 지급기간은 휴직일로부터 최초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수당의 지급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총장은 조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3절 학사관리수당

제12조(학사관리수당) 조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4에 따라 학사관리수당을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제4절 초과근무수당

제13조(시간외근무수당)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조

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준단가에 의해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절 실비보상 등

제14조(정액급식비) 조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14만원의 정액급식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제15조(명절휴가비) ① 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재직 중인 조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절휴가비를 지급한다. 다만, 정직·직위해제 또는 휴직(직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 중에 있는 조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 월봉급액의 60퍼센트를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총장이 정하는 날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기준일 현재 징계처분에 따른 감봉으로 인하여 월봉급액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제16조(연가보상비) 조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맞춤형 복지제도) 조교의 복지 향상과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관한 사항은 이 지침과 별도로 총장이 정한다.

제18조(신분변동시의 수당지급) 조교의 신분에 변동이 있을 경우, 본 장에 규정된 수당은 별표 5에 규정된 바에 따라 지급한다.

제5장 보수지급

제19조(원천징수 등 처리절차) ① 조교가 「인천대학교 조교 보수 규정」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라 매월 본인의 보수에서 일정금액을 원천징수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원천징수 동의서에 동의할 받고자 하는 항목을 모두 기재하고 자필 서명을 하거나 전자인사관리시스템(조교의 인사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인사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을 통하여 「인천대학교 재무회계규정」 제43조제2항에 따른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원천징수를 동의한 조교가 동의내용을 변경 또는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원천징수 동의(변경, 철회)서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봉급표 책정 및 적용시기) 매해 전년도 봉급표에 인상율을 적용하여 1월 1일자로 시행한다.

제3조(적용례) 별표 2 조교의 경력환산율표 상 「구분 1 본교 경력」은 이 지침 시행 이후 신규 채용된 조교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조교의 봉급표 (제4조 관련)

(월지급액, 단위: 원)

호봉	봉급	호봉	봉급
1	2,011,900	21	4,083,500
2	2,079,200	22	4,213,000
3	2,147,100	23	4,381,800
4	2,214,400	24	4,550,200
5	2,282,300	25	4,718,700
6	2,356,600	26	4,886,800
7	2,430,700	27	5,055,000
8	2,505,200	28	5,223,100
9	2,617,000	29	5,351,100
10	2,728,700	30	5,479,200
11	2,840,700	31	5,607,100
12	2,952,000	32	5,735,000
13	3,063,100	33	5,863,000
14	3,174,300		
15	3,304,700		
16	3,435,000		
17	3,564,800		
18	3,694,500		
19	3,824,900		
20	3,954,000		

【별표 2】

조교의 경력환산율표 (제5조 관련)

구분	경력	환산율
1. 본교 경력	가. (구)인천대학교, (구)인천전문대학에서 근무한 경력,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서 정관상 교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100퍼센트
2. 교원 경력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초·중등교육법」 제21조 및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른 기간제교원 및 「유아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기간제교사를 포함한다)으로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100퍼센트 이내. 다만, 교원자격증의 종류와 근무한 학교가 일치하지
	나. 「유아교육법」 제22조, 「초·중등교육법」 제21조 및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사립학교법」 제53조 및 제53조의2에 따라 임면되어 「사립학교법」 제54조에 따라 관할청에 보고된 교원(「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으로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않는 기간제 교원 경력은 80퍼센트 이내, 관할청에 보고되지 않은 사립학교 교원 경력은 50퍼센트 이내의 환산율을 적용한다.
	다.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100퍼센트 이내
	라.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임면된 교원으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학교에서 근무한 경력	100퍼센트 이내
	마. 「유아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자격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특수학교 교원 자격(유치원 과정만 해당한다)을 갖추고 「영유아보육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임면이 보고된 보육교직원으로서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경력	100퍼센트 이내
3. 교원 외의 공무원 경력	가.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현역으로 복무한 군 경력 또는 현역병에 준하는 관리·감독과 보수를 지급받는 보충역 경력을 포함하되, 이에 해당하지 않는 예술체육요원·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 군간부후보생(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병역법」에 따른 무	100퍼센트

	관후보생을 포함한다) 경력은 제외한다]. 다만, 법령에 따른 봉급을 받지 않는 공무원 경력,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한 공무원 경력 외의 비상근 공무원 경력은 제외한다.	
	나. 고용직공무원(대통령령 제12705호 고용직공무원규정 시행일 전의 경노무고용직 외의 고용직공무원과 같은 영 부칙 제2항에 따른 1종 및 2종 고용직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한 경력	80퍼센트
4. 유사 경력	가. 강사 등 경력 1) 「유아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기간제 교사는 제외한다)으로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서 근무한 경력 2)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으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근무한 경력 3) 「고등교육법」 제17조에 따른 시간강사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근무한 경력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의 환산율을 적용한다.
	나. 연구경력 1)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대학원에서 임용권자의 임명을 받아 연구원으로 근무한 경력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연구기관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한 경력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같은 법 제29조의2에 따른 대학원에서 연구전담 조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으며 근무한 경력 4)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로서 「고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수업연한에 따라 각 대학에서 학칙으로 정한 최저 수업연한. 다만, 박사학위의 수업연한은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100퍼센트 이내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의 근무경력 1) 「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 제7265호) 및 「지방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 제7976호)에 따른 잡급으로 근무한 경력과 「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 제7265호) 및 「지방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 제7976호) 시행일 전의 임시직, 촉탁, 잡급 등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서 임시직, 촉탁, 잡급 등으로 근무한 경력 중 1) 외의 경력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경력	80퍼센트 이내. 다만, 2)의 경력 중 업무분야와 동일한 교원자격증 취득 후의 경력 외의 경력은 50퍼센트 이내의 환산율을 적용한다.

라. 그 밖의 경력	
1)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자격을 갖춘 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력	70퍼센트 이내
2)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교원단체 또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서 근무한 경력	70퍼센트 이내
3)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서 소지한 자격과 동일한 분야의 학생교육을 전담하면서 근무한 경력	70퍼센트 이내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종교법인에서 교육활동과 관련된 직무에 근무한 경력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경력	60퍼센트 이내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개별법에 따른 공공법인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법인 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법인에서 행정·경영·연구·기술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50퍼센트 이내
6)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등록된 재외교육기관(한국학교 또는 교육원은 제외한다) 및 재외교육단체에서 근무한 경력	50퍼센트 이내
7)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교육감에게 등록된 학원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된 교습소에서 근무한 경력	50퍼센트 이내. 다만, 강사 또는 교습자로 교육감에게 등록 또는 신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30퍼센트 이내의 환산율을 적용한다.
8) 「상법」 제169조 및 제170조에 따른 회사(외국회사를 포함한다)에서 근무한 경력	40퍼센트 이내
9) 그 밖의 직업에 종사한 경력으로 교육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경력	30퍼센트 이내

비고

1. 위 표 중 제2호, 제3호, 제4호가목·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과거 경력이 채용될 직종과 상통하는 분야의 경력인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100퍼센트까지의 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2. 같은 수준의 2개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경우에는 1개 학교 외의 수학연수는 80퍼센트의 비율을 적용한다.
3. 학력과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 산입한다.
4. 위 표 제2호 및 제4호의 경력(제2호에 따른 경력 중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및 제4호가목의 경력은 제외한다) 중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한 경력(1주 동안 15시간 미만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환산한다. 이 경우 통상적인 근무시간 및 환산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및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를 준용한다.
5. 조교의 경력환산율표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3】

정근수당 등의 지급 구분표 (제9조 관련)

1. 정근수당

근무연수	지 급 액	근무연수	지 급 액
1년 미만	미지급	7년 미만	월봉급액의 30%
2년 미만	월봉급액의 5%	8년 미만	월봉급액의 35%
3년 미만	월봉급액의 10%	9년 미만	월봉급액의 40%
4년 미만	월봉급액의 15%	10년 미만	월봉급액의 45%
5년 미만	월봉급액의 20%	10년 이상	월봉급액의 50%
6년 미만	월봉급액의 25%		

위 표에서 “월봉급액”이란 해당 조교의 1월 1일 및 7월 1일 현재 봉급표상의 월봉급액을 말한다.

2. 장기근속수당

근무연수	월 지 급 액
25년 이상	130,000원
20년 이상 ~ 25년 미만	110,000원
15년 이상 ~ 20년 미만	80,000원
10년 이상 ~ 15년 미만	60,000원
5년 이상 ~ 10년 미만	50,000원

【별표 4】

학사관리수당 지급대상표 (제12조 관련)

(월지급액, 단위: 원)

구 분	학 사 관 리 수 당
조 교	368,580원

【별표 5】

신분변동 시 보수의 지급방법 (제18조 관련)

구 분		봉급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	학사관리수당	가족수당 (가산금포함)	정액급식비	명절 휴가비	비고
직위해제		20% 감	1월 1/6감	20% 감	20% 감	20% 감	일할, ×	◆	직무능력 부족등
		30% 감	1월 1/6감	30% 감	30% 감	30% 감	일할, ×	◆	금품수수 등
		60% 감	1월 1/6감	60% 감	60% 감	60% 감	일할, ×	◆	직위해제후 3개월지난후
징계	견 책	○	×	○	○	○	○	○	
	감 봉	1/10 감	×	1/10 감	1/10 감	1/10 감	○	○	
	정 직	일할, ×	×	일할, ×	일할, ×	일할, ×	일할, ×	◆	
	해 임	일할, ×	×	일할, ×	일할, ×	일할, ×	일할, ×	◆	
	파 면	일할, ×	×	일할, ×	일할, ×	일할, ×	일할, ×	◆	
휴직	질병휴직	1년이하 3할감 2년이하 5할감 2년초과미지급	휴직1월대하여 6분의1 감	1년이하 3할감 2년이하 5할감 2년초과미지급	1년이하 3할감 2년이하 5할감 2년초과미지급	1년이하 3할감 2년이하 5할감 2년초과미지급	일할, ×	◆	
	직(공)무상질병휴직	○	○	○	○	○	○	○	
	유학휴직	2년이하 5할감 2년초과미지급	전액지급 2년초과미지급	2년이하 5할감 2년초과미지급	2년이하 5할감 2년초과미지급	2년이하 5할감 2년초과미지급	일할, ×	◆	
	동반휴직등	×	×	×	×	×	×	×	
	육 아 휴 직	기본급*80% 지급 (지급기간 : 육아휴직 후 최초 1년 이내), 복직후 7개월째 보수일에 15% 합산 지급							
파견	파 견	○	○	○	○	○	○	○	
	공로연수	○	○	○	○	○	○	○	
출장	국내출장	○	○	○	○	○	○	○	
	국외출장 (30일이상)	○	○	○	○	○	○	○	
연가일수를 초과한 결근		○	○	○	○	○	일액 감	○	
대 기 발 령		○	○	○	○	○	일할, ×	○	

1. 일할, × : 월중 발령시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 / 미근무시 : 미지급
2. ◆ 지급기준일(설날, 추석) 현재 직위해제, 정직, 해임, 파면, 휴직 : 미지급

장 애 진 단 서

병 록 번 호		연 번 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
전 화 번 호	() -	주 소	
조 교 성 명		장애인과의 관계	
장애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부상(발병)일	. . .
		* 치료종료일	. . .
		* 장애확정일	. . .
각종 검사소견 및 현재까지의 주요 치료내용 (치료기간, 경과, 수술명, 수술일 포함)			
치료종결 및 장애확정 여부에 대한 의견(예시) ☐ 등급판정 : 『장애등급 제1급』 ☐ 소 견 : 두 눈이 실명된 상태임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장애등급 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상태를 진단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	명 칭 : (인) 소재지 :	의사면허번호 : 전문의성명 : (인) 진료과목 :	

- * 「치료종료일」은 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가 종료된 날을 말함
- * 「장애확정일」은 요양의 종료 또는 보전적 치료단계에 이르러 그 증상이 악화되거나 호전되지 아니하는 상태로 된 후 6월이 경과되고, 그 증상이 자연적으로 최종상태에 이르게 된 날을 말함
- *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해당과목 전문의만 진단서 발행이 가능함

원천징수 동의(신규, 변경, 철회)서*

교 직 원	소 속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원 천 징 수 동 의 사 항	*구 분	*동의사항	금액(단위:원)	*기간	*동의사유 등
본인은 「인천대학교 조교 보수 규정」 제11조에 따라 상기 내역이 매월 본인의 보수에서 원천징수되는 것을 동의(또는 변경, 철회)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 (인)은 자필 서명으로 한다. 인천대학교 지출원 귀하					

- * 「원천징수 동의(신규, 변경, 철회)서」는 원천징수 동의 항목별(예 : 상조회비, 동호회비 등)로 1매씩 작성
- * 「구분」은 신규 신청, 변경, 철회로 구분하여 작성
- * 「동의사항」은 구체적으로 기재 (예 : OO상조회비)
- * 「기간」은 미기재할 경우에는 1년간 동의한 것으로 보며, 필요시 1년 이내의 기간 기재 가능
- * 「동의사유 등」은 원천징수 동의(또는 변경, 철회)사유를 반드시 기재

의안 번호	제2022 - 14호
-------	-------------

**인천대학교 글로벌언어문화원 INU어학센터
교육운영 지침 일부개정지침(안)**

제 출 자	인천대학교 글로벌언어문화원장 김재영
제출년월일	2022. 6. 7.

인천대학교 글로벌언어문화원 INU어학센터 교육운영 지침 일부개정지침(안)

의 번	안 호	2022-14
--------	--------	---------

제출일자 : 2022.06.07

제 출 자 : 글로벌언어문화원장

1. 제안사유

- INU어학센터는 그간 중단되었던 한국어연수과정을 '22년 9월부터 운영 재개 및 공백기간 동안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고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향후 교육부 인증제 취득과 더불어 우수 학생 학부과정 입학유도 등 본원의 선순환 기능 활성화와 정상운영 발판 마련하고자 한국어연수생 수강료 및 강사료 등에 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규정 제명, 제1조, [별표4], 제10조, 제15조 및 제17조 부서명칭 변경
- 제5조(수강료등) [별표1] 한국어교육과정 등록비 및 수강료
- 제10조(한국어강사 채용) [별표5] 한국어강사 채용 서류전형
- 제12조(한국어강사의 강사료등) [별표6] 한국어교육 강사료
- 제15조(수강료등) [별표2] 외국어교육과정 수강료감면기준에 사항을 일부 개정함

3. 참고사항

- 관련법령 : 인천대학교 글로벌언어문화원 운영규정
- 예산조치 : 수강료 및 강사료 조정, 재무경영위원회 심의
-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향후일정 : 2022.5월 : 내부결재, 개정(안) 의견조회 및 사전심사
2022.6월 : 교육연구위원회, 재무경영위원회 심의

붙 임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지침 제 호

인천대학교 글로벌언어문화원 INU어학센터 교육운영 지침 일부개정지침(안)

인천대학교 글로벌언어문화원 INU어학센터 교육운영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대학교 글로벌언어문화원 INU어학센터 교육운영 지침”을 “인천대학교 국제교류원 교육운영 지침”으로 한다.

제1조 중 “글로벌언어문화원 INU어학센터”를 “국제교류원”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제15조제1항 및 제17조제4항 중 “글로벌언어문화원장”을 각각 “국제교류원장”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 중 “(2) 외국어교육 과정”에 관한 사항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 중 “INU어학센터”를 “국제교류원”으로 한다.

별표 5 중 “(1) 한국어강사”에 관한 사항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 중 “(1) 한국어교육 강사료”에 관한 사항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 이후 최초로 외국어교육과정을 등록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별지]

[별표 1] 한국어교육 과정 등록비 및 수강료

구 분	금 액
등록비	70,000원
수강료	1,300,000원

[별표 2] 수강료 감면 기준

(2) 외국어교육 과정

구 분	감면 기준	비 고
본교 재학생(교환학생 포함), 대학원생, <u>수료생 및</u> 졸업생	수강료의 5%	
교직원, 조교 및 직계가족	수강료의 90%	
인천대학교 협약기관 재직자	수강료의 10%	협약서에 의함

※ 외국어교육에 참가하는 본교 재학생(교환학생 포함), 대학원생, 수료생, 졸업생, 교직원, 조교 및 직계가족의 수강료 감면은 별도의 이수기준 충족 시 환급신청서 제출 후 환급 처리 (재학생, 수료생 및 졸업생은 총 출석일수의 80%, 교직원, 조교 및 직계가족은 90% 이상 참석 시 이수처리)

※ 인천대학교 협약기관 재직자의 수강료 감면은 별도의 이수기준 충족 없이 환급 처리

[별표 5] 강사 채용 심사 기준

(1) 한국어강사

서류전형(100점)										면접전형(100점)				합계
학 력			경 력		자 격 증			기 타	소계	교안 평가	시범 강의	종합 면접	소계	200점
한국어 교육 전공	국문학 한국학 등 전공	비전공	2년 이상	1개월~ 2년 미만	한국어 교원 1급	한국어 교원 2급	한국어 교원 3급	자 기 소개서						
<u>박사 30</u> <u>석사 28</u>	<u>박사 20</u> <u>석사 18</u>	<u>박사 10</u> <u>석사 8</u>	30	20	20	15	10	20	100	30	30	40	100	

[별표 6] 강사료 지급 기준

(1) 한국어교육 강사료

구 분		기본강사료
석사	학위 취득 후 경력2년 미만	31,000원
	학위 취득 후 경력2년 이상 5년 미만	33,000원
	학위 취득 후 경력5년 이상	35,000원
박사	학위 취득 후 경력2년 미만	35,000원
	학위 취득 후 경력2년 이상	37,000원

※ 강사료 산정시 경력은 인천대학교 INU어학센터 및 인천한국어학당 근무경력만을 인정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명 : 「인천대학교 <u>글로벌언어문화원</u> <u>INU어학센터</u> 교육운영 지침」	제명 : 「인천대학교 <u>국제교류원</u> 교육운영 지침」																								
제1조(목적) --- <u>글로벌언어문화원 INU어학센 터의</u> ---	제1조(목적) --- <u>국제교류원의</u> ---																								
제2조 ~ 제9조 (생략)	(현행과 같음)																								
제10조제4항 ---글로벌언어문화원장이---	제10조제4항 --- <u>국제교류원장</u> 이---																								
제11조 ~ 제14조 (생략)	(현행과 같음)																								
<u>제15조제1항</u> ---글로벌언어문화원장이---	<u>제15조제1항</u> --- <u>국제교류원장</u> 이---																								
제16조 (생략)	(현행과 같음)																								
<u>제17조제4항</u> ---글로벌언어문화원장이---	<u>제17조제4항</u> --- <u>국제교류원장</u> 이---																								
제18조 ~ 제19조 (생략)	(현행과 같음)																								
[별표 1] 한국어교육 과정 등록비 및 수강료 <table><tr><th>구 분</th><th>금 액</th></tr><tr><td>등록비</td><td>50,000원</td></tr><tr><td>수강료</td><td><u>1,200,000원</u></td></tr></table>	구 분	금 액	등록비	50,000원	수강료	<u>1,200,000원</u>	[별표 1] 한국어교육 과정 등록비 및 수강료 <table><tr><th>구 분</th><th>금 액</th></tr><tr><td>등록비</td><td><u>70,000원</u></td></tr><tr><td>수강료</td><td><u>1,300,000원</u></td></tr></table>	구 분	금 액	등록비	<u>70,000원</u>	수강료	<u>1,300,000원</u>												
구 분	금 액																								
등록비	50,000원																								
수강료	<u>1,200,000원</u>																								
구 분	금 액																								
등록비	<u>70,000원</u>																								
수강료	<u>1,300,000원</u>																								
[별표 2] 수강료 감면 기준 (1) 한국어교육과정 (생략) (2) 외국어교육 과정 <table><tr><th>구 분</th><th>감면 기준</th><th>비 고</th></tr><tr><td>본교 재학생(교환학생 포함), 대학원생 <u>및</u> 졸업생</td><td>수강료의 <u>90%</u></td><td></td></tr><tr><td>(생략)</td><td>(생략)</td><td></td></tr><tr><td>(생략)</td><td>(생략)</td><td>(생략)</td></tr></table> ※외국어교육에 참가하는 본교 재학생(교환학생 포함), 대학 원생 <u>및</u> 졸업생, 교직원, 조교 및 직계가족의 수강료 감 면은 별도의 이수기준 충족 시 환급신청서 제출 후 환급 처리 (재학생 <u>및</u> 졸업생은 총 출석일수의 80%, 교직원, 조교 및 직계가족은 90% 이상 참석 시 이수처리) ※ (생략)	구 분	감면 기준	비 고	본교 재학생(교환학생 포함), 대학원생 <u>및</u> 졸업생	수강료의 <u>90%</u>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별표 2] 수강료 감면 기준 (현행과 같음) (2) 외국어교육 과정 <table><tr><th>구 분</th><th>감면 기준</th><th>비 고</th></tr><tr><td>본교 재학생(교환학생 포함), 대학원생, <u>수료생</u> <u>및</u> 졸업생</td><td>수강료의 <u>5%</u></td><td></td></tr><tr><td>(현행과같음)</td><td>(현행과 같음)</td><td></td></tr><tr><td>(현행과같음)</td><td>(현행과 같음)</td><td>(현행 과같음)</td></tr></table> ※외국어교육에 참가하는 본교 재학생(교환학생 포함), 대학 원생, <u>수료생</u> , 졸업생, 교직원, 조교 및 직계가족의 수강 료 감면은 별도의 이수기준 충족 시 환급신청서 제출 후 환급 처리 (재학생, <u>수료생</u> <u>및</u> 졸업생은 총 출석일수의 80%, 교직원, 조교 및 직계가족은 90% 이상 참석 시 이 수처리) ※ (현행과 같음)	구 분	감면 기준	비 고	본교 재학생(교환학생 포함), 대학원생, <u>수료생</u> <u>및</u> 졸업생	수강료의 <u>5%</u>		(현행과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 과같음)
구 분	감면 기준	비 고																							
본교 재학생(교환학생 포함), 대학원생 <u>및</u> 졸업생	수강료의 <u>90%</u>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구 분	감면 기준	비 고																							
본교 재학생(교환학생 포함), 대학원생, <u>수료생</u> <u>및</u> 졸업생	수강료의 <u>5%</u>																								
(현행과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 과같음)																							

[별표 3] (생략)	[별표 3] (현행과 같음)																																								
[별표 4] 중 <u>INU어학센터</u> 의 ---	[별표 4] 중 <u>국제교류원</u> 의 ---																																								
[별표 5] (1) 한국어강사 <table><tr><th colspan="3">서류전형(100점)</th></tr><tr><th colspan="3">학 력</th></tr><tr><td>한국어교육 전공</td><td>국문학 한국학 등 전공</td><td>비전공</td></tr><tr><td>30</td><td>20</td><td>10</td></tr></table> 나머지 (생략)	서류전형(100점)			학 력			한국어교육 전공	국문학 한국학 등 전공	비전공	30	20	10	[별표 5] (1) 한국어강사 <table><tr><th colspan="3">서류전형(100점)</th></tr><tr><th colspan="3">학 력</th></tr><tr><td>한국어교육 전공</td><td>국문학 한국학 등 전공</td><td>비전공</td></tr><tr><td>박사 30 석사 28</td><td>박사 20 석사 18</td><td>박사 10 석사 8</td></tr></table> 나머지 (현행과 같음)	서류전형(100점)			학 력			한국어교육 전공	국문학 한국학 등 전공	비전공	박사 30 석사 28	박사 20 석사 18	박사 10 석사 8																
서류전형(100점)																																									
학 력																																									
한국어교육 전공	국문학 한국학 등 전공	비전공																																							
30	20	10																																							
서류전형(100점)																																									
학 력																																									
한국어교육 전공	국문학 한국학 등 전공	비전공																																							
박사 30 석사 28	박사 20 석사 18	박사 10 석사 8																																							
[별표 6] 강사료 지급 기준 (1) 한국어교육 강사료 <table><tr><th colspan="2">구 분</th><th>기본강사료</th></tr><tr><td rowspan="2">학사</td><td>학위취득 후 경력5년 미만</td><td>30,000원</td></tr><tr><td>학위취득 후 경력5년 이상</td><td>32,000원</td></tr><tr><td rowspan="3">석사</td><td>학위취득 후 경력2년 미만</td><td>30,000원</td></tr><tr><td>학위취득 후 경력2년 이상 5년 미만</td><td>32,000원</td></tr><tr><td>학위취득 후 경력5년 이상</td><td>34,000원</td></tr><tr><td rowspan="2">박사</td><td>학위취득 후 경력2년 미만</td><td>34,000원</td></tr><tr><td>학위취득 후 경력2년 이상</td><td>36,000원</td></tr></table> (2) 외국어교육 강사료 (생략)	구 분		기본강사료	학사	학위취득 후 경력5년 미만	30,000원	학위취득 후 경력5년 이상	32,000원	석사	학위취득 후 경력2년 미만	30,000원	학위취득 후 경력2년 이상 5년 미만	32,000원	학위취득 후 경력5년 이상	34,000원	박사	학위취득 후 경력2년 미만	34,000원	학위취득 후 경력2년 이상	36,000원	[별표 6] 강사료 지급 기준 (1) 한국어교육 강사료 <table><tr><th colspan="2">구 분</th><th>기본강사료</th></tr><tr><td rowspan="2">(삭제)</td><td>(삭제)</td><td>(삭제)</td></tr><tr><td>(삭제)</td><td>(삭제)</td></tr><tr><td rowspan="3">석사</td><td>학위취득 후 경력2년 미만</td><td>31,000원</td></tr><tr><td>학위취득 후 경력2년 이상 5년 미만</td><td>33,000원</td></tr><tr><td>학위취득 후 경력5년 이상</td><td>35,000원</td></tr><tr><td rowspan="2">박사</td><td>학위취득 후 경력2년 미만</td><td>35,000원</td></tr><tr><td>학위취득 후 경력2년 이상</td><td>37,000원</td></tr></table> ※ 강사료 산정시 경력은 인천대학교 INU어학센터 및 인천한국어학당 근무경력만을 인정한다. (현행과 같음)	구 분		기본강사료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석사	학위취득 후 경력2년 미만	31,000원	학위취득 후 경력2년 이상 5년 미만	33,000원	학위취득 후 경력5년 이상	35,000원	박사	학위취득 후 경력2년 미만	35,000원	학위취득 후 경력2년 이상	37,000원
구 분		기본강사료																																							
학사	학위취득 후 경력5년 미만	30,000원																																							
	학위취득 후 경력5년 이상	32,000원																																							
석사	학위취득 후 경력2년 미만	30,000원																																							
	학위취득 후 경력2년 이상 5년 미만	32,000원																																							
	학위취득 후 경력5년 이상	34,000원																																							
박사	학위취득 후 경력2년 미만	34,000원																																							
	학위취득 후 경력2년 이상	36,000원																																							
구 분		기본강사료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석사	학위취득 후 경력2년 미만	31,000원																																							
	학위취득 후 경력2년 이상 5년 미만	33,000원																																							
	학위취득 후 경력5년 이상	35,000원																																							
박사	학위취득 후 경력2년 미만	35,000원																																							
	학위취득 후 경력2년 이상	37,000원																																							
[별표 7] (생략)	[별표 7] (현행과 같음)																																								

[붙임] 개정지침(안) 변경사항 세부

1. 한국어교육 과정 등록비 및 '수강료' 개정(안)

구 분	금 액
등록비	50,000원 → 70,000원
수강료	1,200,000원 → 1,300,000원

- (개요) 타 대학 상황을 고려하여 인천대학의 한국어연수과정 등록비는 70,000원 (40% 인상) 및 수강료 1,300,000원(8.3% 인상)으로 정하여 국립대와 지방 사립 대학의 평균과 보조를 맞추어 운영하고자 함.
- 인천대학 한국어연수과정 등록비 및 수강료
 - 주요 국공립대학 평균 대비 26% 및 15% 저렴
 - 지방 주요 사립대학 평균 대비 50% 및 12% 저렴
 - 서울 주요대학 평균 대비 32% 및 34% 저렴
- 주요 대학 한국어연수과정 등록비/수강료 내역

주요 국공립대학		
대학	등록비	수강료
평 균	63,000	1,376,000
서울대	-	1,730,000
부산대	80,000	1,400,000
서울과기대	-	1,400,000
시립대	50,000	1,350,000
경북대	70,000	1,300,000
전남대	50,000	1,300,000
전북대	-	1,300,000
충남대	60,000	1,300,000
충북대	70,000	1,300,000

지방 주요 사립대학		
대학	등록비	수강료
평 균	75,000	1,346,000
명지대	50,000	1,450,000
아주대	60,000	1,400,000
인하대	60,000	1,370,000
경기대	100,000	1,350,000
한남대	70,000	1,300,000
선문대	100,000	1,300,000
가톨릭	60,000	1,300,000
계명대	100,000	1,300,000

서울 주요 대학		
대학	등록비	수강료
평 균	66,000	1,608,000
서강대	60,000	1,790,000
연세대	80,000	1,770,000
경희대	60,000	1,750,000
고려대	90,000	1,750,000
이화여대	60,000	1,720,000
중앙대	100,000	1,700,000
동국대	60,000	1,670,000
세종대	100,000	1,650,000
한국외대	60,000	1,630,000
성균관대	60,000	1,600,000
숙명여대	60,000	1,550,000
국민대	50,000	1,500,000
송실대	60,000	1,450,000
성신여대	60,000	1,400,000
광운대	50,000	1,400,000
한성대		

인천대 50,000 1,200,000
 ▼ ▼
 70,000 1,300,000
 으로 변경 예정

2. 한국어교육 과정 강사 채용시 '서류전형' 심사점수 개정(안)

- (개요) 한국어강사 채용심사시 '서류전형'에 대해 석사, 박사를 구분하고 차등화하여 심사하고자 함.

서류전형(100점)		
학 력		
한국어교육 전공	국문학 한국학 등 전공	비전공
<u>30</u>	<u>20</u>	<u>10</u>

⇒

서류전형(100점)		
학 력		
한국어교육 전공	국문학 한국학 등 전공	비전공
박사 30	박사 20	박사 10
석사 28	석사 18	석사 8

3. 외국어교육 과정 '수강료감면기준' 개정(안)

구 분	감면기준	비 고	⇒	구 분	감면기준	비 고
본교 재학생(교환학생 포함), 대학원생 및 졸업생	수강료의 90%			본교 재학생(교환학생 포함), 대학원생, <u>수료생</u> 및 졸업생	수강료의 5%	

- (개요) 외국어교육과정 중 '본교 재학생(교환학생 포함), 대학원생 및 졸업생'에 대한 수강료 감면기준을 현재 시행중인 정책에 맞게 '수료생'을 추가하고 5%로 바로잡고자 함. (사유 : '21년 지침 개정 당시 규정 오기재)

4. 한국어교육 과정 '강사료' 개정(안)

구 분		기본강사료	⇒	구 분		기본강사료
학사	학위취득 후 경력5년 미만	30,000원		(삭제)	(삭제)	(삭제)
	학위취득 후 경력5년 이상	32,000원			(삭제)	(삭제)
석사	학위취득 후 경력2년 미만	30,000원		석사	학위취득 후 경력2년 미만	31,000원
	학위취득 후 경력2년 이상 5년 미만	32,000원			학위취득 후 경력2년 이상 5년 미만	33,000원
	학위취득 후 경력5년 이상	34,000원			학위취득 후 경력5년 이상	35,000원
박사	학위취득 후 경력2년 미만	34,000원		박사	학위취득 후 경력2년 미만	35,000원
	학위취득 후 경력2년 이상	36,000원			학위취득 후 경력2년 이상	37,000원

※ 강사료 산정시 경력은 인천대학교 INU어학센터 및 인천한국어학당 근무경력만을 인정한다.

- (개요) 타 대학 상황, 최근 수년 간 물가인상, 2014년 이후 강사료 동결, 소비자 물가상승률 21년 2.5% 22년 3% 내외로 인상요인 발생 등 감안 인천대학의 한

국어강사료는 각 구간별 1,000원씩 인상하고자 함.

- 인천대 강사료 평균 33,000원, 타대학 평균 35,000원 내외
- 수강료 1,200천원→1,300천원으로 8.3% 인상예정므로 강사료 인상요인 충분
- 한국어 강의 질 제고를 위해 석사학위 이상자만 채용하고자 하며, 학사학위 취득자에 대한 강사료 기준은 삭제하고자 함.
- 전국 주요대학 한국어학당은 석사 이상 강의 (일부 지방 하위권 대학 제외)
- 또한 타 대학 추세를 반영하여 채용전 경력은 채용심사시 활용하고자 하며, '학위취득후' 경력을 삭제하고 본교 '채용후' 경력부터 산정하여 강사료를 지급하고자 함.

○ 인천대학 한국어연수과정 강사료 : 평균 33,000원 내외

- 주요 대학 평균 : 35,000원 내외
- 주요 국공립대학 : 30,000원 ~ 42,000원 이상까지 다양
- 주요 사립대학 : 25,000원 ~ 45,000원 이상까지 다양

○ 주요 대학 한국어강사료 내역

구분	대학명	강사료 내역
국공립 대학	인천대	30,000원 ~ 36,000원 (경력, 학위에 따라 상이)
	서울대	35,000원 ~ 42,000원 (무기강사는 급여제)
	전북대	35,000원
	부산대	34,500원, 32,000원(임시강사)
	충남대	32,000원 ~ 35,000원
	전남대	31,000원
	시립대	30,000원 ~ 35,000원 (박사급은 1천원 추가)
	과기대	30,000원, 35,000원 (2년 이후)
	충북대	30,000원 ~ 32,000원
사립 대학	단국대	37,000원(학사), 40,000원(석사), 45,000원(박사)
	성균관대, 용인대	35,000원 또는 이상
	명지대	35,000원
	이화여대	31,000원 ~ 33,000원
	한양대	30,000원 ~ 41,000원
	한국외대, 숙명여대	30,000원 ~ 38,000원
	가톨릭대	30,000원 ~ 35,000원
	성신여대	30,000원 ~ 33,000원
	경희대	29,000원 ~ 42,000원
	아주대	29,000원 ~ 35,000원
	연세대	28,000원 ~ 36,200원, 35,500원~42,000원(퇴직급여포함시)
	국민대	26,000원 ~ 36,000원, 석사 +2,000원, 매년 1,000원 인상
	인하대	26,000원 ~ 35,000원
	건국대	25,000원 ~ 40,000원

[붙임] 개정지침(안) 전문

인천대학교 국제교류원 교육운영 지침(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인천대학교 국제교류원의 한국어교육 및 외국어교육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한국어교육

제2조(교육과정) ① 한국어교육은 정규과정 1급부터 6급까지를 운영하며, 필요에 따라 특별과정, 단기과정 및 위탁운영 과정 등 별도의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정규과정은 매년 3월부터 익년 2월말까지 4학기(봄, 여름, 가을, 겨울학기)를 개설하고, 학기별 교육시간은 총 200시간으로 한다.

③ 정규과정 이외의 과정은 기간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조(지원절차) ① 정규과정 등록을 원하는 신규 지원자는 정해진 서류를 정해진 지원기간 안에 제출하여 입학심사에 통과하여야 한다.

② 전형 관련 세부사항은 매년 별도로 정한다.

제4조(등록) 입학심사에 통과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내 등록비와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비는 신규 등록자에 한해 납부한다.

1. 어학연수(D-4)비자 소지자 :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전까지
2. 기타 비자 소지자 : 매 학기 개시 전 정해진 등록기일 내

제5조(수강료 등) ① 등록비 및 수강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수강료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③ 수강료 환불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며, 등록비는 환불하지 않는다.

제6조(수업 및 평가) ① 수업은 1일 4시간씩 운영한다. 다만,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온라인 강의 등 별도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수업 종료 후 통합정보 출석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학생의 출석을 확인한다.

③ 시험은 매 학기 중간 및 기말에 행하며,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의 4개 분야를 평가한다.

④ 성적은 100점 만점으로 하여 중간시험(40%), 기말시험(40%), 수업참여도 및 과제물평가(20%) 비율로 산출한다.

제7조(수료) ① 수료는 성적 60점 이상, 출석률 80% 이상인 경우 인정한다.

② 동일한 급수를 다음 각 호의 기간 내 수료하지 못한 어학연수(D-4)비자 소지자에 대해 다음 학기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1. 1급 ~ 3급 : 2학기 이내

2. 4급 ~ 6급 : 3학기 이내

제8조(제적) 연수생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적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연속으로 10일을 초과하여 결석하거나 또는 결석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할 경우
2. 어학연수생으로서 범죄 및 성비위 등과 관련되어 품위를 손상하는 경우

제9조(장학금) 정규과정을 수료한 연수생에 대해서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한국어강사 채용) ① 한국어강사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한국어강사는 3급 이상의 한국어교원자격증을 취득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한국어 관련 전공자(국어국문학, 한국학, 한국어교육학 등)
2. 제1호 이 외의 분야를 전공한 자 중 한국어교육 강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③ 한국어강사에 지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지원서(본교 소정양식)
2. 졸업 및 성적증명서
3. 경력 및 재직증명서
4. 한국어교원자격증 사본

④ 채용 심사는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심사위원 위촉 등에 관한 사항은 국제교류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1조(한국어강사의 운영) 한국어강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운영한다.

1. 주임강사 : 강의, 연수생 관리, 한국어교육 과정과 강의계획 및 강사 관리 등 각 분야별 총괄 업무 수행
2. 급주임강사 : 강의, 연수생 관리 및 각 급별 책임 역할 수행
3. 일반강사 : 강의 및 연수생 관리

제12조(한국어강사의 강사료 등) ① 한국어강사의 강사료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매 학기 개시 전 결정하여 지급한다.

② 주임강사와 급주임강사에게는 별표 7의 기준에 따른 강사수당을 지급한다.

제3장 외국어교육

제13조(교육과정) ① 외국어교육은 정규과정과 일반 외국어강좌, 어학특강 위탁교육 등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별도의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외국어교육의 학제는 매년 3월부터 익년 2월까지로 하며 필요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지원절차) 외국어교육 정규과정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홈페이지 온라인으로 수강신청을 한다.

제15조(수강료 등) ① 외국어강좌 및 위탁교육의 수강료는 국제교류원장이 정한다.

② 졸업인증대체수업의 수강료는 특례편입생 외는 과목당(LC/RC) 100,000원, 특례편입생은 과목당(LC/RC) 60,000원으로 한다.

③ 수강료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④ 수강료 환불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제16조(수업관리) ① 수업시간은 매월 4주로 하며, 연 48주로 수업한다.

② 평가는 수업이 종료되기 전에 시행한다.

③ 수강확인증을 발급하여 수강 확인여부를 증빙한다.

④ 공무원 위탁교육 수강생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료하지 못한다.

1. 결석 3회 이상인 경우

2.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평균성적이 70점 미만인 경우

⑤ 졸업인증대체수업 수강생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료하지 못한다.

1. 특례편입생 외 : 영어특강을 96시간 이상 출석하고 총 3회 이상 시험 실시 후 평균점수 70점 이상 취득하지 못한 경우

2. 특례편입생 : 영어특강을 48시간 이상 출석하고 총 2회 이상 시험 실시 후 평균 점수 70점 이상 취득하지 못한 경우

제17조(외국어강사 채용) ① 외국어강사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외국어강사는 해당 언어 관련 전공(해당언어문학, 해당언어학, 해당언어교육학 등)을 이수한 자여야 한다.

③ 외국어강사에 지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한다.

1. 지원서 1부

2. 학력증명서 각 1부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

3. 재직 및 경력증명서

④ 채용 심사는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심사위원 위촉 등에 관한 사항은 국제교류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8조(외국어강사의 운영) 외국어강좌 외국어강사는 담당 강좌의 수강생을 교육 및 평가한다.

제19조(외국어강사의 강사료) 외국어강좌 외국어강사의 강사료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부칙 <제360호, 2021.1.15.>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지침의 폐지) 「인천대학교 인천한국어학당 세부운영지침」은 폐지한다.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 이후 최초로 외국어교육과정을 등록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별표 1]

한국어교육 과정 등록비 및 수강료

구 분	금 액
등록비	70,000원
수강료	1,300,000원

[별표 2]

수강료 감면 기준

(1) 한국어교육 과정

구 분	감면 기준	비 고
본교 재학생(교환학생 포함), 대학원생 및 교직원, 본교 자매대학 교직원	수강료의 50%	등록비 면제
본교 자매대학 재학생, 졸업생	수강료의 10%	

(2) 외국어교육 과정

구 분	감면 기준	비 고
본교 재학생(교환학생 포함), 대학원생, 수료생 및 졸업생	수강료의 5%	
교직원, 조교 및 직계가족	수강료의 90%	
인천대학교 협약기관 재직자	수강료의 10%	협약서에 의함

※외국어교육에 참가하는 본교 재학생(교환학생 포함), 대학원생, 수료생, 졸업생, 교직원, 조교 및 직계가족의 수강료 감면은 별도의 이수기준 충족 시 환급신청서 제출 후 환급 처리 (재학생, 수료생 및 졸업생은 총 출석일수의 80%, 교직원, 조교 및 직계가족은 90% 이상 참석 시 이수처리)

※ 인천대학교 협약기관 재직자의 수강료 감면은 별도의 이수기준 충족 없이 환급 처리

[별표 3]

수강료 환불 기준

(1) 한국어교육 과정

환불요청일	환불금액	비 고
학기 시작 전	수강료 전액	원단위 절사 (등록비 제외)
학기 1/3 경과 전	수강료의 2/3	
학기 1/2 경과 전	수강료의 1/2	
학기 1/2 경과 후	환불불가	
① 사유에 따라 입학허가서 원본, 비자 거부사유서, 합격증명서, 재학예정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환불 가능		
② 제출서류 위·변조 시 수강료 환불 불가		
③ 송금 수수료는 연수생 부담		
④ 장기결석, 소재불명으로 인한 제적생은 수강료 환불 불가		

(2) 외국어교육 과정

환불사유	환불사유 발생일	비 고
1. 「평생교육법」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환불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수강료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2. 「평생교육법」 제28조제4항제3호에 따른 환불사유의 경우	가.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수강료 전액
	2)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수강료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3)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 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미 낸 수강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4)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환불하지 아니함
	나.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수강료 전액
	2) 수업시작 이후	환불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환불 대상 수강료(가목에 따라 산출된 환불 대상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1. “수강료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수강료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 2. “총수업시간”이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 3. 환불금액의 산정은 환불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위 기준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3에 근거함		

[별표 4]

한국어교육 과정 장학금 지급 기준

구 분	금 액	지급 기준
성적우수장학금	300,000원	해당학기 출석률 80% 이상이며 성적이 우수한 학생
학습활동우수장학금	50,000원	보충학습활동, 과제활동우수자 중 매학기 약간 명에게 지급
근로장학금	200,000원	3급 이상의 연수생 중 매학기 타 연수생의 학업과 생활지도 및 안내활동에 참여한 자 중 약간 명에게 지급(근무는 주당 6~8시간 이내)
공로장학금	50,000원	국제교류원의 발전 및 연수생 모집에 공헌한 자, 외부 대회에서 입상한 자 등에게 지급

[별표 5]

강사 채용 심사 기준

(1) 한국어강사

서류전형(100점)										면접전형(100점)					합계
학 력			경 력		자 격 증			기타	소계	교안 평가	시범 강의	종합 면접	소계	200점	
한국어 교육 전공	국문학 한국학 등 전공	비전공	2년 이상	1개월~ 2년 미만	한국어 교원 1급	한국어 교원 2급	한국어 교원 3급	자 기 소개서							
박사 30	박사 20	박사 10	30	20	20	15	10	20	100	30	30	40	100		
석사 28	석사 18	석사 8													

(2) 외국어강사

서류전형(100점)										면접전형(100점)				합계
학 력			경 력		자 격 증			기타	소계	교안 평가	시범 강의	종합 면접	소계	200점
해당 언어 교육 전공	해당 언어학 등 전공	비전 공	2년 이상	2년 미만	무 경력	해당언어 고급이상	해당언어 중급이상	자 기 소개서						
30	25	20	30	25	20	20	15	20	100	30	30	40	100	

[별표 6]

강사료 지급 기준

(1) 한국어교육 강사료

구 분		기본강사료
석사	학위 취득 후 경력2년 미만	31,000원
	학위 취득 후 경력2년 이상 5년 미만	33,000원
	학위 취득 후 경력5년 이상	35,000원
박사	학위 취득 후 경력2년 미만	35,000원
	학위 취득 후 경력2년 이상	37,000원

※ 강사료 산정시 경력은 인천대학교 INU어학센터 및 인천한국어학당 근무경력만을 인정한다.

(2) 외국어교육 강사료

구 분	금 액
수강생 15명 이상	50,000원
수강생 10명 ~ 14명	45,000원
수강생 5명 ~ 9명	35,000원
수강생 5명 미만	실비(수강료 범위 내에서 지급)

※ 외부 출강시에는 별도로 지급단가를 정하며, 초빙교원은 현행 지급기준을 적용

[별표 7]

한국어교육 강사수당 지급 기준

구 분	금 액
주임강사	학기당 700,000원
급주임강사	학기당 500,000원

의안 번호	제2022 - 15호
-------	-------------

**2022년도 법인회계 제1회 세입 ·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 출 자	인천대학교 기획예산처장 서정현
제출년월일	2022. 6. 7.

2022년도 법인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안 번호	2022-15
----------	---------

제출일자 : 2022. 6. 7.

제출자 : 기획예산처장

1. 제안사유

- 2022년도 법인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은 보조금 수입 및 전입금 수입의 세입·세출 증감내역과 시급을 요하는 사업의 세출예산을 조정하여 재무경영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붙임 참조

3. 참고사항

- 인천대학교 정관 제23조 제2항 제2호
- 인천대학교 재무경영위원회 규정 제2조 제2호

(별책자료)

- 2022년도 법인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부.
- 세입 및 세출 세부사업설명서 1부.

2022년도 제1회 법인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주요내용

1 편성방향

- 보조금 지원사업 협약비, 산학협력단 전입에 따른 사업비 반영
- 대학혁신사업 자율혁신계획에 따른 특성화 사업 편성
- 법적·의무적 경비 및 시급을 요하는 사업비 편성

2 추경예산(안) 규모

- 예산규모 : 228,838,602천 원 【기정예산 대비 3.0% / 6,628,479천원】

(단위 : 천원)

제1회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228,838,602	222,210,123	6,628,479	3.0%

3

세입·세출예산 편성 내역

1. 세입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1회추경 예산(안)	부 서 명
합 계		6,628,479	
정부출연금 및 보조금수입		6,128,479	
	천원의 아침밥 지원 사업비 (성립전경비)	24,400	학생지원과
	일경험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성립전경비)	70,206	학생지원과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비 (성립전경비)	600,000	취업역량개발과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비 (성립전경비)	18,953	장애학생지원센터
	대학혁신지원사업 보조금 (성립전경비 16,2억원+추가경정 37,8억원)	5,400,000	대학혁신사업단
	연수구 대학연계 평생학습활성화 사업비 (성립전경비)	14,920	평생교육원
전입금 수입		500,000	
	산학협력단 전입금 수입 (성립전경비)	500,000	공동기지원

2. 세출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1회추경 예산(안)	부 서 명
합 계		6,628,479	
학사 및 교육운영		6,613,559	
	대학교육 및 연구여건 개선	570,206	
	강의환경 조성지원 (성립전경비)	70,206	학생지원과
	특성화 및 대학정책 연구지원 (추가경정)	-	대외전략과
	공동기지원 운영 (성립전경비)	500,000	공동기지원
학생활동 지원		43,353	
	학생활동지원 (성립전경비)	24,400	학생지원과
	장애학생센터 지원 (성립전경비)	18,953	장애학생지원센터
취업지원		600,000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성립전경비)	600,000	취업역량개발과
대학혁신지원		5,400,000	
	대학혁신지원사업 운영 (성립전경비 16,2억원+추가경정 37,8억원)	5,400,000	대학혁신사업단
평생교육 지원		14,920	
평생교육 활성화		14,920	
	평생교육원 운영 (성립전경비)	14,920	평생교육원

3. 세부사업별 세출편성 예산(안)

(단위 : 천원)

정책	단위	세부	예산과목	사업개요	1회추경 예산(안)	부서명
합 계					6,628,479	
학사 및 교육운영					6,613,559	
		대학교육 및 연구여건 개선			570,206	
		강의환경 조성지원			70,206	학생지원과
		일용인부임	일경험프로그램 참여자 인건비	70,206		
		특성화 및 대학정책 연구지원			-	대외전략과
		직원 법정부담금	지역동행 플랫폼 연구소 직원 법정부담금	4,200		
		기타직 인건비	지역동행 플랫폼 연구소 인건비	42,000		
		행사비	지역동행 플랫폼 구축 사업 활동지원비	△ 50,000		
		행사비	지역동행 플랫폼 연구소 사무국 개소식	3,800		
		공동기기원 운영			500,000	공동기기원
		자산및물품취득비	공동활용장비 구입비	492,000		
		장비관리비	공동활용장비 유지보수 및 부품교체	8,000		
		학생활동 지원			43,353	
		학생활동지원			24,400	학생지원과
		학생지원비	천원의 아침밥 학생지원비	24,400		
		장애학생센터 지원			18,953	장애학생 지원센터
		일용인부임	교육지원인력 인건비	6,562		
		일반용역비	원격프로그램 운영비	5,291		
		행사비	사전교육 행사비	1,100		
		자산및물품취득비	학습보조기기 구입비	6,000		
		취업지원			600,000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600,000	취업역량 개발과
		임차료	센터 복합기 임차비	1,500		
		여비	센터 여비	4,000		
		일반수용비	센터 소모품비	13,500		
		교육훈련비	센터 역량강화교육비	20,000		
		일반용역비	진로교과목 콘텐츠 개발 등	419,000		
		업무추진비	업무협의 및 컨소시엄 관리비	14,000		
		행사비	교직원 역량강화 워크숍	15,000		
		학생지원비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등	113,000		

(단위 : 천원)

정책	단위	세부	예산과목	사업개요	1회추경 예산(안)	부 서 명
		대학혁신지원			5,400,000	
		대학혁신지원사업 운영			5,400,000	대학혁신 사업단
			직원법정부담금	사업운영 직원 법정부담금	28,600	
			기타직인건비	사업운영 직원 인건비	393,500	
			임차료	교육지원 서버 임차료	198,000	
			여비	사업운영 출장여비	18,000	
			일반수용비	프로그램 운영 일반수용비	44,000	
			인쇄출판비	연구보고서 제작 인쇄비	45,500	
			제세공과금	협의회 연회비 및 컨디션 참가비 등	13,000	
			일반용역비	교육환경 구축 및 프로그램 지원 용역	651,750	
			업무추진비	사업운영 업무추진비	3,410	
			홍보비	프로그램 운영 홍보비	6,900	
			행사비	특성화,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903,650	
			기타운영비	위원회 운영 및 전문가 위원 수당	21,700	
			연구활동비	특성화 교과목 및 프로그램 개발 등	584,430	
			학부교내장학금	특성화,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장학금	297,400	
			대학원교내장학금	연구소 학생연구원 장학금	124,000	
			학생지원비	특성화,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학생지원비	361,100	
			기타학생경비	특성화, 비교과, 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	401,400	
			반환금	사업비 반환금	9,000	
			교육연구기자재구입	교육용 기자재 구입	88,500	
			자산및물품취득비	특성화교육 인프라 및 창의협업공간 구축	944,260	
			도서구입	특성화 학과 도서구입비	2,000	
			건설중인시설비	특성화교육 인프라 및 창의협업공간 구축	259,900	
평생교육 지원					14,920	
		평생교육 활성화			14,920	
		평생교육원 운영			14,920	평생교육원
			특별강사료	연수구 대학연계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 특별강사료	9,650	
			홍보비	연수구 대학연계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 홍보비	1,170	
			행사비	연수구 대학연계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 행사비	4,100	

4

세입 · 세출예산 편성 총괄

1. 세입예산(안)

(단위 : 천원)

목	1회추경 예산(안)	구성비	기정 예산액	구성비	증감	증감율	비고
계	228,838,602	100.0%	222,210,123	100.0%	6,628,479	3.0%	
등록금수입	62,117,217	27.1%	62,117,217	28.0%	0	0.0%	
학부등록금수입	51,176,076	22.4%	51,176,076	23.0%	0	0.0%	
대학원등록금수입	9,847,845	4.3%	9,847,845	4.4%	0	0.0%	
계약학과등록금수입	665,888	0.3%	665,888	0.3%	0	0.0%	
수강료 수입	427,408	0.2%	427,408	0.2%	0	0.0%	
정부출연금 및 보조금	140,301,760	61.3%	134,173,281	60.4%	6,128,479	4.6%	
출연금수입	106,503,000	46.5%	106,503,000	47.9%	0	0.0%	
보조금수입	33,798,760	14.8%	27,670,281	12.5%	6,128,479	22.1%	
전입 및 기부금수입	9,290,000	4.1%	8,790,000	4.0%	500,000	5.7%	
전입금 수입	8,840,000	3.9%	8,340,000	3.8%	500,000	6.0%	
기부금 수입	450,000	0.2%	450,000	0.2%	0	0.0%	
교육부대 및 교육외수입	2,604,056	1.1%	2,604,056	1.2%	0	0.0%	
대학원입시수입	68,600	0.0%	68,600	0.0%	0	0.0%	
기타 교육부대 수입	205,410	0.1%	205,410	0.1%	0	0.0%	
교육외 수입	1,565,840	0.7%	1,565,840	0.7%	0	0.0%	
수익재산 수입	764,206	0.3%	764,206	0.3%	0	0.0%	
고정자산 매각수입	5,000	0.0%	5,000	0.0%	0	0.0%	
유형자산 매각	5,000	0.0%	5,000	0.0%	0	0.0%	
이월금	6,000,000	2.6%	6,000,000	2.7%	0	0.0%	
전기이월 자금	6,000,000	2.6%	6,000,000	2.7%	0	0.0%	
수입대체경비사업	8,520,569	3.7%	8,520,569	3.8%	0	0.0%	
공개강좌	249,950	0.1%	249,950	0.1%	0	0.0%	
입시운영	911,960	0.4%	911,960	0.4%	0	0.0%	
논문심사	109,850	0.0%	109,850	0.0%	0	0.0%	
기숙사운영	4,624,614	2.0%	4,624,614	2.1%	0	0.0%	
스포츠센터	1,843,370	0.8%	1,843,370	0.8%	0	0.0%	
일반수입대체 수입	222,150	0.1%	222,150	0.1%	0	0.0%	
평생교육원 수입	552,675	0.2%	552,675	0.2%	0	0.0%	
INU어학센터 수입	6,000	0.0%	6,000	0.0%	0	0.0%	

2. 세출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1회추경 예산(안)	구성비	기정 예산액	구성비	증감	증감율	비고
계	228,838,602	100.0 %	222,210,123	100.0 %	6,628,479	3.0 %	
인건비	92,228,697	40.3 %	92,228,697	41.5 %	0	0.0 %	
인력운영비	92,228,697	40.3 %	92,228,697	41.5 %	0	0.0 %	
교원보수	67,428,981	29.5 %	67,428,981	30.3 %	0	0.0 %	
직원보수	24,799,716	10.8 %	24,799,716	11.2 %	0	0.0 %	
관리운영비	9,914,807	4.3 %	9,914,807	4.5 %	0	0.0 %	
기본운영비	9,914,807	4.3 %	9,914,807	4.5 %	0	0.0 %	
부서운영비	193,681	0.1 %	193,681	0.1 %	0	0.0 %	
학사행정 지원	9,721,126	4.2 %	9,721,126	4.4 %	0	0.0 %	
학사 및 교육운영	36,915,819	16.1 %	30,302,260	13.6 %	6,613,559	21.8 %	
대학 교육 및 연구여건 개선	23,511,814	10.3 %	22,941,608	10.3 %	570,206	2.5 %	
교원 연구활성화 지원	6,618,338	2.9 %	6,618,338	3.0 %	0	0.0 %	
강의환경 조성 지원	9,622,113	4.2 %	9,551,907	4.3 %	70,206	0.7 %	
사이버강의시스템 운영	116,600	0.1 %	116,600	0.1 %	0	0.0 %	
공학교육혁신센터 운영	26,200	0.0 %	26,200	0.0 %	0	0.0 %	
특성화 및 대학정책 연구지원	2,111,205	0.9 %	2,111,205	1.0 %	0	0.0 %	
융합연구비 지원	12,000	0.0 %	12,000	0.0 %	0	0.0 %	
우수 연구인력 지원	27,000	0.0 %	27,000	0.0 %	0	0.0 %	
국가시책사업 운영 지원	2,970,565	1.3 %	2,970,565	1.3 %	0	0.0 %	
공동기원 운영	615,462	0.3 %	115,462	0.1 %	500,000	433.0 %	
계약학과 운영	492,331	0.2 %	492,331	0.2 %	0	0.0 %	
대학 현안사업 지원(공통)	900,000	0.4 %	900,000	0.4 %	0	0.0 %	
취업 지원	3,041,968	1.3 %	2,441,968	1.1 %	600,000	24.6 %	
취업지원 운영	1,537,887	0.7 %	1,537,887	0.7 %	0	0.0 %	
취업특강 운영	24,200	0.0 %	24,200	0.0 %	0	0.0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600,000	0.3 %	0	0.0 %	600,000	0.0 %	
진로취업교과목 운영	30,000	0.0 %	30,000	0.0 %	0	0.0 %	
IPP형 일학습병행제 운영	661,147	0.3 %	661,147	0.3 %	0	0.0 %	
선예원 운영	23,000	0.0 %	23,000	0.0 %	0	0.0 %	
CPA반 운영	57,190	0.0 %	57,190	0.0 %	0	0.0 %	
학생생활상담소 운영	96,604	0.0 %	96,604	0.0 %	0	0.0 %	
INU 인권센터 운영	11,940	0.0 %	11,940	0.0 %	0	0.0 %	

(단위 : 천원)

사 업 명	1회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		비고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학생활동 지원	3,122,457	1.4 %	3,079,104	1.4 %	43,353	1.4 %	
학생활동 지원	2,687,272	1.2 %	2,662,872	1.2 %	24,400	0.9 %	
학생생활 지도	181,934	0.1 %	181,934	0.1 %	0	0.0 %	
사회봉사센터 지원	199,220	0.1 %	199,220	0.1 %	0	0.0 %	
장애학생센터 지원	54,031	0.0 %	35,078	0.0 %	18,953	54.0 %	
국제화 지원	1,805,580	0.8 %	1,805,580	0.8 %	0	0.0 %	
해외교류 지원	146,364	0.1 %	146,364	0.1 %	0	0.0 %	
해외어학연수 및 해외인턴지원	640,000	0.3 %	640,000	0.3 %	0	0.0 %	
외국인 교환학생 지원	579,694	0.3 %	579,694	0.3 %	0	0.0 %	
외국인 유학생 지원	116,500	0.1 %	116,500	0.1 %	0	0.0 %	
인천국제개발협력센터 운영	323,022	0.1 %	323,022	0.1 %	0	0.0 %	
대학혁신 지원	5,434,000	2.4 %	34,000	0.0 %	5,400,000	15,882.4 %	
대학혁신지원사업 운영	5,434,000	2.4 %	34,000	0.0 %	5,400,000	15,882.4 %	
교육인프라 구축	39,760,532	17.4 %	39,760,532	17.9 %	0	0.0 %	
정보화 지원	4,967,702	2.2 %	4,967,702	2.2 %	0	0.0 %	
도서기반 확충	2,991,696	1.3 %	2,991,696	1.3 %	0	0.0 %	
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	1,645,035	0.7 %	1,645,035	0.7 %	0	0.0 %	
대학정보화시스템 기반 확충	330,971	0.1 %	330,971	0.1 %	0	0.0 %	
실험실습운영 기반 확충	3,410,043	1.5 %	3,410,043	1.5 %	0	0.0 %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3,087,893	1.3 %	3,087,893	1.4 %	0	0.0 %	
실험실 안전관리	322,150	0.1 %	322,150	0.1 %	0	0.0 %	
캠퍼스 지원	31,382,787	13.7 %	31,382,787	14.1 %	0	0.0 %	
시설물 유지관리	27,498,787	12.0 %	27,498,787	12.4 %	0	0.0 %	
기숙사 유지관리	3,884,000	1.7 %	3,884,000	1.7 %	0	0.0 %	
우수인재 양성	42,432,652	18.5 %	42,432,652	19.1 %	0	0.0 %	
복지 지원	41,441,907	18.1 %	41,441,907	18.6 %	0	0.0 %	
장학금 확충 지원	41,441,907	18.1 %	41,441,907	18.6 %	0	0.0 %	
우수학생 유치지원	103,550	0.0 %	103,550	0.0 %	0	0.0 %	
대학원 입시운영	80,030	0.0 %	80,030	0.0 %	0	0.0 %	
대학 입시운영	23,520	0.0 %	23,520	0.0 %	0	0.0 %	

(단위 : 천원)

사 업 명	1회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		비고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대학 홍보	887,195	0.4 %	887,195	0.4 %	0	0.0 %	
대학 이미지 홍보	813,823	0.4 %	813,823	0.4 %	0	0.0 %	
홍보 기념품 제작	51,452	0.0 %	51,452	0.0 %	0	0.0 %	
홍보 대사 운영	21,920	0.0 %	21,920	0.0 %	0	0.0 %	
평생교육지원	278,596	0.1 %	263,676	0.1 %	14,920	5.7 %	
평생교육 활성화	278,596	0.1 %	263,676	0.1 %	14,920	5.7 %	
평생교육원 운영	14,920	0.0 %	0	0.0 %	14,920	0.0 %	
INU어학센터 운영	72,036	0.0 %	72,036	0.0 %	0	0.0 %	
공자학원 운영	191,640	0.1 %	191,640	0.1 %	0	0.0 %	
예비비	1,150,184	0.5 %	1,150,184	0.5 %	0	0.0 %	
예비비	1,150,184	0.5 %	1,150,184	0.5 %	0	0.0 %	
예비비	1,150,184	0.5 %	1,150,184	0.5 %	0	0.0 %	
수입대체 경비사업	6,157,315	2.7 %	6,157,315	2.8 %	0	0.0 %	
공개강좌	172,617	0.1 %	172,617	0.1 %	0	0.0 %	
최고위과정 운영	172,617	0.1 %	172,617	0.1 %	0	0.0 %	
입시운영	895,960	0.4 %	895,960	0.4 %	0	0.0 %	
입시 운영	895,960	0.4 %	895,960	0.4 %	0	0.0 %	
논문심사	109,850	0.0 %	109,850	0.0 %	0	0.0 %	
논문지도 및 심사	109,850	0.0 %	109,850	0.0 %	0	0.0 %	
생활원운영	3,046,852	1.3 %	3,046,852	1.4 %	0	0.0 %	
제1기숙사 운영	435,039	0.2 %	435,039	0.2 %	0	0.0 %	
제2기숙사 운영	1,255,960	0.5 %	1,255,960	0.6 %	0	0.0 %	
제3기숙사 운영	1,333,721	0.6 %	1,333,721	0.6 %	0	0.0 %	
게스트하우스 운영	22,132	0.0 %	22,132	0.0 %	0	0.0 %	
스포츠센터운영	1,290,359	0.6 %	1,290,359	0.6 %	0	0.0 %	
스포츠센터 운영	1,290,359	0.6 %	1,290,359	0.6 %	0	0.0 %	
일반수입대체	641,677	0.3 %	641,677	0.3 %	0	0.0 %	
일반수입대체 사업	111,900	0.0 %	111,900	0.1 %	0	0.0 %	
평생교육원 운영(수입대체)	477,172	0.2 %	477,172	0.2 %	0	0.0 %	
국제계절학기 운영	52,605	0.0 %	52,605	0.0 %	0	0.0 %	

5

예산총칙

제1조(예산규모) 2022년도 인천대학교 법인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228,838,602천원으로 한다.

제2조(세입·세출예산명세)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3조(일시차입금) 일시차입금의 한도액은 22,883,860천원으로 한다.

제4조(예비비) 예비비는 1,150,184천원으로 한다.

제5조(기타사항) 예산집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재무회계 규정에 의한다.

